



4》소프트웨어 단과대학 설립, 눈가리고 아웅?

PROBLEM	SOLUTION
평가방식	통일된 강의지표, 구글드라이브 활용 업로드
팀티칭	강의진행방식 보완, 강의평가 문제 예전
출결방식	U-Class, 구글 설문 거쳐 결국 호명식으로

8》국제캠 청소노동자 간접고용의 폐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가 임상교수인건비를 학교 운영비로 속였다며 법인이 제대로 학교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13일 청운관 앞에서 경희법인에게 학교운영비 160억을 지급하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사진=이수형 기자)

“병원 돈을 왜 법인 통해서 주나” 총학, 160억 다시 달라며 법인 ‘비난’

법인전입금 스캔들, 사실은?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8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학교가 회계감사에서 160억 위반금액을 적발당했다’고 전하며 ‘경희학원이 160억 원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처럼 속여왔다’고 비난했다.

총학이 ‘경희학원이 160억을 정상적으로 지원했다면 교양강의 6,400개를 열 수 있었다’며 ‘160억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회계 상 실책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회계 상 이동을 ‘편법지출’로 표현한 것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160억, 정확히 161억을 의료원으로부터 학교에 전달한 경로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법인이 이 돈을 부풀리려는 술

수’라고 평가했다. 그 과정에서 ‘비리’, ‘(160억 원을)해먹었다’, ‘불법’ 등의 표현을 사용해 파장을 키웠다. 동시에 경희학원이 학교예산의 단 0.2%인 10억 원만을 책임지고 있다며 법인전입금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학이 제기한 이 ‘회계비리 스캔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총학이 ‘경희학원이 160억을 정상적으로 지원했다면 교양강의 6,400개를 열 수 있었다’며 ‘160억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회계 상 실책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회계 상 이동을 ‘편법지출’로 표현한 것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160억, 정확히 161억을 의료원으로부터 학교에 전달한 경로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법인이 이 돈만큼의 지원을 더 해

줘야만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

160억 원의 위법성과 횡령 가능성

다만, 총학이 문제제기 한 160억의 움직임은 사실이다. 경희학원은 의과대학 임상교수 월급의 절반을 법인회계를 거쳐 학교회계에 전입시켜왔다. 이는 교육부의 회계처리 지침과 다른 것이 맞으며 교육부 감사관은 지난 5월에 진행된 회계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지난해 경희학원이 학교에 준 전입금은 173억이고, 이 중 경희의료원이 경희학원에 준 전입금은 161억 원이다. 법인이 법적의무로 쥐어야하는 돈이 아닌데도 학교에 지원한 *경상비전입금은 12억 원 정도다. ‘왜 임상교원 월급 절반이 법인을 거치게 하는가’하는

질문에 경희학원 측이 “오래전부터 해온 관행”이라고 답변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회계감사를 진행한 대주 회계법인 측은 “회계비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회계를 간결하게 하라는 권고일 뿐, 160억 원에 관한 지적사항은 전입금 부풀리기나 비리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경희학원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경희학원 관계자는 “부속병원전입금 322억 원 중 절반을 법인을 통해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지적사항은 회계를 간결하게 하라는 지시일 뿐”이라고 마찬가지로 전했다. 또한 “이미 해당 지적사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학사 규정 개정으로 수업일수의 절반까지 출석 인정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우리학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 출석인정사유에 따른 출석인정 일수에 대한 규정이 지난 1일 개정됐다. 기존에는 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유 즉, ‘공결 사유’로 인해 해당 학생이 출석을 못할 경우 수업 일수의 3분의 2 기간 내에서 출석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결 사유에 따른 출석인정 일수는 수업일수의 2분의 1로 축소 제한됐다.

단,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는 출석

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출석이 인정된다. 조기 취업자와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에 대한 근거 또한 추가 됐다. 각각 12조 1항 7호와 8호를 추가하여 ‘졸업예정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와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의 사유’를 출석인정 사유로 명시했다. 그간 별도의 시행 세칙이 제정돼 운영돼 오던 것이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의 조항으로 이전된 것이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에 학사지원과 한상 계장은 “공결 사유더라도 수업에 절반 이상

을 결석했는데 성적인정이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에서 추가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공결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일수를 포함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성적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다. 학사지원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사유가 추가 된 데에 학사지원과 측은 “교육부에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안내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추가

한 것”이라 말했다.

이밖에도 휴강 시 학생에게 고지 를 해야 한다는 규정과 휴강 시 보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는 휴강 시 학생에게 미리 고지를 하지 않는다는 학생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학점취득방법 중 대학원 교과목 수강도 학점 인정이 된다는 내용이 추가 됐다. 마지막으로 성적 공시기간 종료 후에는 성적 정정을 할 수 없으나, 학생의 과실이 아닌 경우 부총장의 허가가 있을 시 성적 정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온로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전문가 칼럼

북·미수교 이끌어야 한반도 비핵화
김민웅(교육대학원) 교수 ▶7면

